■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·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6호서식]

[ ] 위기아동 / [ ] 위기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 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60일

신청 기관	기관명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
	대표자 성명	기관 유형 [ ] 공공 [ ] 법인([ ] 비영리 [ ] 영리) [ ] 단체 [ ] 그 밖의 기관( )
	소재지	전화번호
	설립 목적	
	설립 연월일	설립 근거
	사업 유형 [ ]가족돌봄 [ ] 고립・은둔 [ ] 가족돌봄 및 고립・은둔	

「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・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기아동・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보건복지부장관 / 수탁기관의 장 귀하

첨부서류	1. 위기아동・청년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경영계획 및 실적 2. 위기아동・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및 조직 역량 확보 실적 3. 위기아동・청년 지원 프로그램의 계획 수립 및 운영 실적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➔	접수・검토	➔	서면・현장평가	➔	심의・의결	➔	결과 통보
신청기관		처리기관 (보건복지부 또는 수탁기관)		처리기관 (보건복지부 또는 수탁기관)		처리기관 (보건복지부 또는 수탁기관)		처리기관 (보건복지부 또는 수탁기관)